공무원임대주택 심사대상자 증빙서류제출 매뉴얼

【심사대상자의 증빙서류제출은 제출기한 동안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】

- 1. 입주신청서 제출 후 심사대상자 발표
 - 신청자가 작성한 입주신청서를 토대로 선정한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점 증빙서류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geps.or.kr)와 신청자의 휴대폰 SMS로 예비대상자를 알려드립니다
-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『알림소식』→『공지/소식』→『공지사항』→『임대주택입주자모집』



- ① 『알람소식』→ 『공지/소식』 클릭
- ② 『공지사항』→ 『임대주택입주자모집』 클릭
- ※ 임대주택 입주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해당화면에 공지합니다



- ※ 심사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기한('20. 8.28.)까지 시스템 업로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가점 심사에서 제외합니다.
- 지정된 파일형식 외 다른 형식으로 제출하였거나 스캔불량 등은 가능한 경우 서류 심사는 진행하나, 관련된 책임(파일 열람불가 및 육안 확인불가 등)은 신청자 본인에 귀책됨을 알려드리오니 제출 완료 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"내연금보기"를 클릭합니다



3.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일반로그인 합니다 (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)



4. 고객지원시스템의 상단 메뉴 중

『주택/분양/임대」→『임대주택』→『예비입주자 모집』→『직접배정 신청현황관리 클릭』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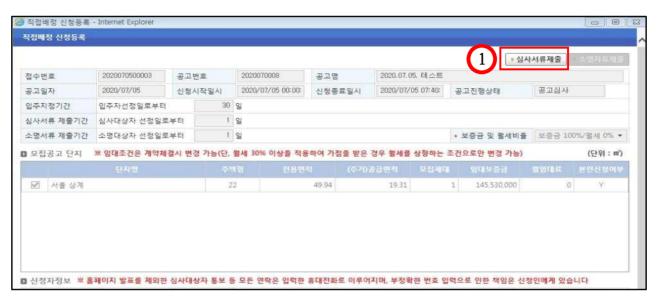
5. 입주신청서 조회



- ① 직접배정 신청현황관리 화면에서 "본인신청여부" 체크
- ② "조회" 버튼 클릭하시면 신청하신 공고가 표시됩니다
- ③ 조회 된 공고에서 본인신청 여부란 "Y" 클릭하시면 입주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

6. "심사자료 제출" 버튼 클릭

- 신청자의 심사제출자료는 공고문 또는 "가점 심사대상별 제출서류 (8page, 9page)" 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"심사서류목록"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가점별 심사 자료는 제출하셔야 합니다
-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입주신청서 상단에 "심사서류제출" 버튼을 클릭합니다



- ① 입주신청서 우측 상단의 "심사서류체출" 클릭하시면
- ② 신청자가 체출해야 할 "심사서류목록"이 나오고
- ③ 해당 서류를 첨부할수 있는 "파일정보" 표시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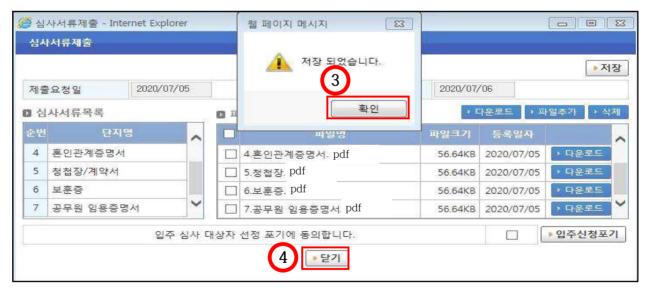


- ※ 개인별 **화면**에 나타나는 「심사서류목록」은 <u>예시</u>입니다. 본인이 심사요청 한 <u>개인별</u> 가점별 심사(증빙)자료를 이 화면에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.
 - "심사자료 제출"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만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오니, 정상 업로드 여부 확인바랍니다.

7. 심사서류 파일 제출



- ① "심사서류목록"의 증빙서류를 "파일추가"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합니다(심사서류목록은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)
- ② "심사서류목록"의 증빙서류를 모두 등록하시고 "저장"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



- ③ "저장" 버튼을 클릭하고 "확인" 버튼을 누르시고
- ④ "닫기" 버튼을 클릭하시면 심사서류제출은 완료 됩니다
- ※ 증빙서류는 모집공고일(20.8.12) 이후 발급된 서류를 기한 내 제출된 경우만 인정됩니다.
- 시스템에 업로드 된 서류만 심사대상 서류가 됩니다. (메일, 팩스 등 직접 발송자료 불인정)
- 지정된 파일형식 외 다른 형식으로 제출하였거나 스캔불량 등으로 인한 책임(파일 열람불가 및 육안 확인불가 등)은 신청자 본인에 귀책됨을 알려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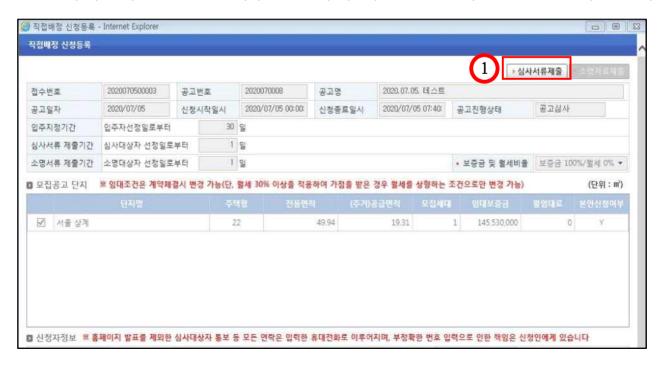
8. 심사서류 삭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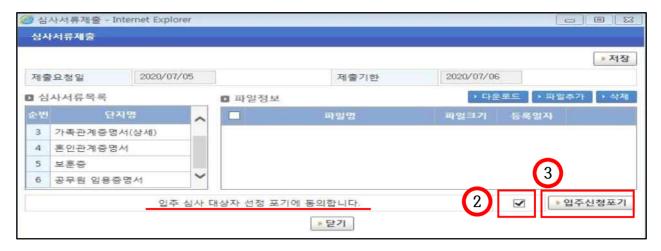
- ① "파일정보"의 증빙서류 삭제하시려면 등록 된 파일의 "체크박스"를 체크해 주시고
- ② "삭제" 버튼을 클릭 후 "저장"을 누르시면 삭제가 완료됩니다
- ③ 삭제 후 새로운 증빙서류를 첨부하실 때는 "7. 심사서류 파일 제출" 으로 돌아가서 다시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

9. 입주신청 포기

-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입주 신청을 포기할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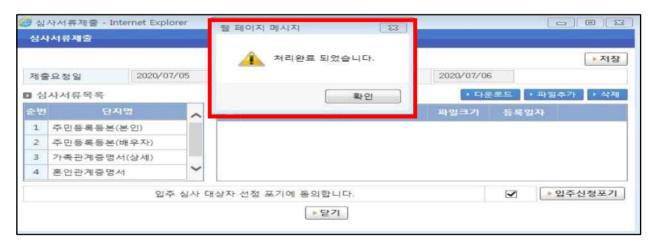
① "심사서류제출"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



- ② "입주심사 대상자 선정 포기" 박스를 체크해주시고
- ③ "입주신청포기"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가 나옵니다



④"확인" 버튼을 클릭하시면 "처리완료" 안내 문구가 나오며 "처리완료" 안 내 문구의 "확인"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주신청포기가 완료됩니다



- ※ 입주신청 일부 진행 후 포기 시 전산상 신청포기 완료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개인 정보·자료 등이 삭제되오니 신청 포기 전 필요하신 정보 등은 본인 책임하에 저장하여 두시기 바라며, 본인의사와 반하게 신청되는 경우가 없도록 삭제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자료

가점 심사대상별 제출서류 (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)

구 분	필요서류					
공통 (필수서류)	①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. -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,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제출 ② 신청자의 <u>가족관계증명</u> 서(상세) 1부. ※ 상세로 발급 필요					
전국 무주택 기간	해당 없음(국토교통부 전산정보 활용)					
신청자 소득	해당 없음(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자료 활용)					
양육가정	① 임신진단서 1부. - 미성년이나 영유아 자녀에 태아를 포함 하여 점수를 산정한 자					
신혼부부	① 혼인관계증명서 1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 지 ※ 現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일이 아닌 경우 상세로 발급 -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로 점수를 산정한 자					
예비신혼부부	① 예비신혼부부 입주신청 서약서(필수) ,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1부. -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예비신혼부부 가점 산정한 자 ② 주민등록표등본 은 본인 및 예비배우자 각 1부 제출(신혼부부와 동일) ※ 6개월 내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계약체결로 <u>서약서 미제출 시 부적격</u> 처리 전염병 등의 사유로 예식 생략시 청첩장(예식장계약서) 생략 가능					
	① 장애인등록증 등 주거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- 주거약자 가점 점수를 산정한 자					
주거약자 가정	"장애인•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(주거약자법)"에 따른 주거약자의 범위 가. 65세 이상인 사람 나. "장애인복지법"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. "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"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급 ~ 7급) 라. "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"에 따른 보훈대상자(상이등급 1급 ~ 7급) 마. "5•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"에 따라 등록된 부상자(산체 장해등급 1급 ~14급) 바. "고엽제휴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"에 따른 환자로서 경도장애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					
한부모가정	① <u>한부모가족증명서</u> 1부. ※ 발급: 주민센터, 무인민원발급기, 정부24홈페이지 - 한부모 가점 점수를 산정한 자 (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)					
신규임용 공무원	해당 없음					
인사교류 등	① 인사발령 문서 사본 1부. - 인사교류 및 파견으로 점수를 산정한 자(소재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 한함)					

[※] 서류제출 미비로 인한 부적격 사례가 많습니다만, 제한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업무 특성상 개별 자료보완 요청은 불가합니다. 반드시 공고문 및 가점 증빙서류 적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예비신혼부부 입주신청 서약서

(별표10 (5) 관련)

주택구분		단	지	명		동·호또	는 주택형
신 청 내 역	소 속						
	생년월일						
	결혼예정일			년	월	일	
예 비배우자	성 명						
	생년월일						

본인은 상기 공무원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의 자격으로 입주신청하는 자로서, 입주자로 선정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·해제되고 퇴거하여야 하며, 손해배상 및 부정입주자로 입주가 제한되며 위약금이 부과됨을 이해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: (서명) 직장전화: () -자택전화: () -

공무워연금공단 이사장 귀하

※첨부서류: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사본 1부.